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방향*

이 창 우**

.....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기업에서 감사위원회가 도입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현황, 감사위원회의 조직, 구성원, 감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외부감사인과 경영자와의 관계, 및 감사위원회의 질적수준의 유지 등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 감사위원회제도가 정착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 및 실무적인 업무의 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물론 하나의 규정이 우리 나라의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각국의 제도도입현황에 대한 분석과 그 사회적인 배경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I. 감사위원회제도 도입배경과 중요성

우리 나라가 지난 1997년 이후 초래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기업의 경영투명성 결여와 회계정보의 신뢰성 부족이 경제위기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은행은 우리 나라에 기업구조조정차관을 제공하면서 우리 나라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자의 부정에 대한 감시기구로서 경영자의 재무보고과정 전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기구이다. 즉, 감

* 본 연구의 일부는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위원회는 재무보고 전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공정한 재무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위임자인 소유주(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보흐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높은 대리인비용 상황하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감시기구이다. 감사위원회는 또한 감시과정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수집한 각종 재무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경영자 통제기구로서의 이사회 의 위상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부감사인, 외부감사인들 간에 대화의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감사를 하도록 기여한다.

감사위원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단일이사회제도에서 이사회 의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내부기관이다. 감사위원회는 보통 3명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을 감시·감독하는 상설기관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 중 하나로서 주로 경영진에 대한 감독 및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와 회계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를 관장하며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제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또한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제청과 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 경영진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미국의 법률가협회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회와 외부감사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외부감사인의 추천, 외부감사인과 감사계획의 검토, 외부감사인과 감사보고서의 검토 및 외부감사인과 내부통제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즉, 감사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를 검토하고, 재무제표의 작성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기업윤리규범의 제정과 검토, 특별한 관리가 요망되는 지출의 검토, 정부규정의 준수여부 및 회사와 경영진과의 거래 승인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주로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를 검토하고 내부감사인을 장악하며 재무제표의 작성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적극 개입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을 추천하고 감사계획에 대한 검토와 감사보수를 결정한다. 이러한 역할은 회계정보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 경영자가 분식결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

쇄하고 외부감사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임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외부기관으로서 회사의 의뢰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여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며 감사수임료도 감사를 의뢰한 회사로부터 받게 된다. 두 기관은 성격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 달성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감사위원회는 일부 국가에서 여러 해 전부터 도입해 오고 있으나, 최근들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의견교환을 보조해주는 중요한 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특히 능률적이고 안목을 갖춘 감독활동을 통하여 높은 품질의 재무보고를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주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감사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강하고 독립적인 기구가 이사회를 견제할 수 없다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경영에 의문을 품게 된다. 최근에는 기업의 외부에 대한 재무보고와 내부통제에 대하여 경영진과 주주들과의 관계를 연결하여 주는 독립적인 이사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된 감사위원회가 이와 같은 연결기능을 주로 담당함으로써 업무에 바쁜 경영진과 이사회에 부과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기업에서 감사위원회가 도입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현황, 감사위원회의 조직, 구성원, 감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외부감사인과 경영자와의 관계 및 감사위원회의 질적 수준의 유지 등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 감사위원회제도가 정착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 및 실무적인 업무의 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물론 하나의 규정이 우리 나라의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각국의 제도도입현황에 대한 분석과 그 사회적인 배경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II. 감사위원회의 기능의 발전과정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주로 기업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이의 승인여부를 이사회에 권고하는 것과, 기업의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과의 관계를 감독하는 것, 그리고 경영자진술서(management letter)에 언급된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를 검토하는 것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인 변화로 인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 기회와 기업간 경쟁의 심화, Network, Internet 및 전자자료(Electronic Data)교환을 포함하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전달 방식의 변화, 거래내용, 회계기준 및 규제요건의 복잡화,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경제난과, 빈번하게 발생한 기업 실패로 인하여 기업의 외부보고에 대한 신뢰성의 감소, 이익의 질이나, 기업 재무상태에 대해 적정하고 완전한 공시의무가 있는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의 증가, 기업윤리에 대한 공공의 관심의 증가, 및 기업의 위험관리과정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 대두와 같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는 미국에서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8년 말, SEC Chairman은 공기업의 재무보고 과정에 대한 이사회 감독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기업의 감사위원회제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위원회인 Blue Ribbon Committee가 구성되었다. Blue Ribbon Committee는 1998년 10월, SEC 의장인 Arthur Levitt이 기업의 재무보고 과정에 대해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감독할 것을 요구한 데에 따른 반응으로 뉴욕증권거래소와 NASD에 의해 만들어졌다. 위원회의 목적은 SEC, 감사인, 기업 등에게 이와 같은 기능을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2월 Blue Ribbon 위원회의 보고서는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내부 및 외부감사인, 경영자, 이사회에 대한 기능의 변화와 기대에 대해 다음의 <표 1>과 같은 10가지 주요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표 1>에 언급된 Blue Ribbon 위원회의 감사위원회제도의 기본원칙은 기업의 상황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의 목적은 좋은 실무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세부적인 책임은 각 기업

〈표 1〉 Blue Ribbon Committee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

권고안 1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은 경영자와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수행하는데 방해받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없다면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독립성을 해치는 관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회사 및 회사의 관계회사에 당기중 또는 과거 5년간 고용된 사실이 있는 자
- 회사 및 회사의 관계회사로부터 이사직 수행에 따른 보수나 퇴직금제도에 따른 혜택 이외에 여타의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회사 및 회사의 관계회사에 경영자로 고용되었거나 지난 5년간 고용한 사실이 있는 자의 가족
- 회사의 영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면서 지난 5년간 주요 거래에 대해 대금지급이나 대금수령이 있었던 영리회사의 지배주주, 경영자이거나 이었던 자

위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경우에도 이사회가 특별히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연차 보고서에 회사와의 관계와 위원 위촉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뉴욕증권거래소와 NASD가 시가총액 2억 불(\$200million: 조정 가능함)을 초과하는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 2

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권고안 1을 수용함과 아울러 뉴욕증권거래소와 NASD가 시가총액 2억 불(\$200million: 조정 가능함)을 초과하는 상장기업은 독립적인 위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는 뉴욕증권거래소와 NASD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을 시가총액 2억 불(\$200million: 조정 가능함) 이하의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 3

위원회는 뉴욕증권거래소와 NASD가 시가총액 2억 불(\$200million: 조정가능함)을 초과하는 상장기업은 최소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각 구성원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후 일정기간 이내에 기업의 재무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최소한 위원중 한 사람은 회계나 기업 재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뉴욕증권거래소와 NASD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자격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을 시가총액 2억 불(\$200million: 조정 가능함) 이하의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 4

위원회는 뉴욕증권거래소와 NASD가 각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는 1) 감사위원회의 책임범위, 책임수행방법(구조, 과정, 구성원 요건 포함)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공식규정의 채택과, 2) 매년 감사위원회 규정의 정확성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표 1〉 계속

권고안 5

위원회는 SEC가 각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주주총회에 배포될 보고서에서 감사위원회가 공식규정을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와 채택하고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수행된 지난 1년간의 책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를 기술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식규정은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주주들에 대한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하며, 규정에 주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주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권고안 6

위원회는 뉴욕증권거래소와 NASD의 상장규정에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 규정은 외부감사인이 이사회와 주주의 대리인인 감사위원회에 대해 보고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주주를 대신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 평가, 및 교체할 권한이 있음을 기술하도록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 7

위원회는 뉴욕증권거래소와 NASD의 상장규정에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인과 기업간의 관계를 기술한 공식문서를 수령할 책임이 있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와의 관계나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책임이 있으며, 이사회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의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권고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 8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감사기준(GAAS)은 기업의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 재무보고에 적용된 회계원칙의 수용성 뿐만 아니라 원칙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는 재무공시의 명료성과 회계원칙의 보수적인 정도, 재무제표 작성에 경영자에 의해 사용되거나 외부감사인이 검토한 중요한 의사결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권고안 9

위원회는 SEC가 모든 기업은 주주에 대한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감사위원회 서한과, 다음과 같은 사항 여부를 포함하는 10-K를 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 경영자는 감사위원회와 적용된 회계원칙의 질적 측면과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단사항을 토의하였다, 2)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 적용된 회계원칙의 질적 측면과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단사항을 토의하였다, 3)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경영자와 외부감사인 없이 앞의 1)과 2)에 기술된 내용을 토의하였다, 4) 감사위원회는 경영자 및 외부감사인과의 토론과 검토에 근거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는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기술되었음을 믿는다.

〈표 1〉계 속

권고안 10

위원회는 SEC가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10-Q를 작성하기에 앞서 sas 71 중간검토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성되고 명확한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기업과 주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다. 감사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감사인과 경영진간의 의사소통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개선하게 된다.

III. 국가별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현황

감사위원회는 미국기업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도입되었던 기구이나, 최근에는 유럽이나 남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서도 점차 일반적인 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1997년 PWC에 의해 수행된 주요 유럽 기업들의 감사위원회 실무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법적인 규정이나 증권거래소의 요구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60% 이상이 감사위원회를 가지고 있었고, 영국, 프랑스, 스위스의 순으로 채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발표된 Cadbury Code of Best Practice in Britain(1992)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세계각국의 규정들에서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국의 선도기업들이 이와 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도입이 다른 기업에도 일반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이나 규제당국 그리고 국제기구(예를 들면, EC)의 공표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이 감사위원회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국가별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현황과 실태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국가별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현황

1) Australia:

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함.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존재여부를 밝혀야 함.

2) Canada:

공기업은 최소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Toronto와 Montreal 증권거래소는 상장된 법인들이 연차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이사회와 소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상황을 포함하여야 함.
Dey Committee의 1994년 보고서 “Guidelines for Improved Corporate Governance in Canada”에서 추가적인 규정들이 있음.

3) France:

1995년에 발행된 “공기업의 이사회에 대한 Vienot 보고서”에서 모든 회사들이 비상임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추천하고 있음.
위의 감사위원회는 특히 기업의 내부통제와 회계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위 보고서의 추천사항은 아직 Paris Bourse의 상장규정으로 강제화 되지는 않았으며 현재 제도의 도입은 자발적인 상태임.

4) Germany:

1998년 5월에 ‘통제와 투명성’을 위한 규정인 “KonTraG”이 공포되었음. 위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의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함.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감독위원회에 참석하여 감사발견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5) Hong Kong:

홍콩증권거래소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a Code of Best Practice’를 공포하였음.
위의 규정은 강제적이지는 않으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기업의 연차보고서와 중간보고서에 위 규정의 준수여부를 공시하여야 함. 위 규정의 내용중에는 기업의 외부재무 보고과정과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과 검토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감사위원회의 설립을 추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6) Japan:

아직 증권거래소가 공인하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1998년 5월에 산업체, 기관투자가 및 학계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인 모인 가운데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포럼(Corporate Governance Forum of Japan)”을 개최하고 자발적인 규정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원칙(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을 발표하였음.

〈표 2〉 계 속

위의 포럼은 비상임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추천하고 있음. 감사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기업의 위험관리와 각종 규제사항의 준수여부를 검토하는 것임.

7) Netherlands:

1997년 6월에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의 지원으로 자발적 규정인 “Peters Committee” 보고서가 발행되었음.

위의 보고서는 기업의 감독위원회 또는 이사회소속 감사소위원회가 외부재무보고의 질(quality)을 감독하고, 모든 법률과 내부통제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며, 기업과 외부감사인과의 관계를 감독하는 기능을 갖도록 추천하고 있음.

8) New Zealand:

1999년 1월 뉴질랜드증권거래소는 상장규정을 개정하였음.

위의 개정된 상장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의 연차보고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현황을 공시하도록 되었음.

9) Singapore:

싱가폴의 회사법은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위의 회사법은 추가적으로 증권거래소가 규정한 감사위원회의 실무가이드에 의하여 보완되고 있음.

상장법인들은 경영진의 보고서(Director’s Report)에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보고하여야 하며 연차보고서에 위의 실무가이드의 준수여부를 공시하도록 되어있음.

10) South Africa:

1994년에 The “King” Report가 발표되었음.

위의 보고서는 기업들이 비상임이사들을 다수로 하는 감사위원회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추천하고 있음.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들이 연차보고서에 위의 보고서의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이같은 제도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제도를 강제화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Registra of Banks와 같은 다른 규제기관들도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11) Thailand:

1998년 1월 타일랜드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에 대한 Notification을 통하여 상장법인들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위의 Notification은 감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할 사항과 감사위원회가 수행한 감독활동에 대한 보고 등 7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2〉 계 속

12) United Kingdom: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1992년의 Cadbury 위원회의 보고서는 1998년 6월에 공표된 Hampel 위원회의 “Combined Code”로 통합되었음.

위의 규정은 자발적인 규정으로서 최소한 3명의 비상임이사들(이들 중 독립적인 이사들이 다수여야 함)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추천하고 있음.

런던증권거래소의 경우 영국에 상장되는 기업들은 연차보고서에 위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13)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 The American and New York Stock Exchange

: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NASD)

Banks and Savings 기관들도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1991)

따라서 FDIC Improvement Act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모든 기업들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은 모두 비상임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야 함.

IV. 감사위원회의 조직

감사위원회의 법적 요건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국가는 상장기업에 대해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일부 국가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책임범위는 지역별 상거래 문화와 이사회 및 경영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담당하는 관리위원회(Management Board)와 일반적인 감독기능을 전담하는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위원회에서 선출된다. 무엇보다도 주요한 요구조건은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재무보고와 내부통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독립된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건 간에 감사위원회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 감사위원회의 규정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서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적절하고 상세하게 기술된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책임에 대해 이사회, 감사위원회 구성원, 경영자와 내부 및 외부감사인이 참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위원회의 규정은 연차보고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주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전반적인 목적과 목표, 감사위원회 조직의 규모, 회의의 빈도와 시기,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자격요건 및 임기 포함), 경영자, 내부 및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보고책임 및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등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규정은 이사회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며, 규정의 제정은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위원회의 의무는 능률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와 같이 규정이 회사의 변화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하고 상세하게 기술된 규정은 감사위원회가 이와 같은 규정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회사에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규정은 위원회 회의의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 되고, 정기적으로(최소한 1년에 한번) 위원회의 목적이 충족되고 있는 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한 틀이 된다.

2. 감사위원회의 구성원

감사위원회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구성원을 임명하는 것은 위원회의 성과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사회나 추천위원회(nominations committee)는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는 책임을 진다. 이사회나 추천위원회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구성원만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격요건은 감사위원회의 규정에 기술되어야 한다.

1) 자격요건

각 구성원은 위원회에 가치 있는 공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견해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방향으로만 강조하게 된다. 각 구성원이 지녀야 하는 자격요건에는 성실성, 시간과 정열의 투입, 영업, 제품, 용역에 대한 이해, 호기심과 독립적인 판단능력 및 새로운 견해와 건설적인 제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등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비록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구성원 중 최소한 한 사람은 회계나 재무관리 전문가이면 유용한데,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은 과거 회계나 재무분야의 일을 했거나, 그와 유사한 비교가능한 일을 했던 경험을 가진 자가 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같은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의 의장(chairman)을 선출할 때는 이사회가 강한 리더쉽과 능률적인 업무관계(구성원 간, 그리고 경영자, 내부 및 외부 감사인 간에)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선택해야 한다.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구성원의 성격과 경험, 구성원의 기술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2) 업무수행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은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정열을 위원회 활동에 투입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활동에는 회사의 영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 회의 준비 및 참석, 다른 집단과의 비공식적인 모임을 포함한다. 위원들은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들이 여타의 이사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원회의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위원회의 잠재적인 후보자를 평가할 때 이사회는 후보자들이 보유한 이사직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3) 위원회의 규모

감사위원회는 견해와 경험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커야 하고, 그러면서도 능률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작은 규모이어야 한다. PWC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요 유럽 회사들의 경우 70% 정도의 위원회가 3명이나 4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3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적정규모라고 본다. 그러나, 위원회의 규모는 회사의 상황에 적합해야 하고, 위원회의 책임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3. 독립적인 이사들(independent Directors)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과정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감독과정에서 경영자의 판단에 도전하거나 경영자의 판단과 상반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보고에 대해 보고하지만 주주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감독기능을 수행하므로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독립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독립적인 이사들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가장 좋다. 대부분의 투자자와 대표기관에서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개념적 틀이나 지침을 만들기는 하지만, 독립성이라는 개념은 정의하기 어렵다.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현재 및 과거(통상 과거 5년)에 회사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아닌 다른 직책으로 회사나 관계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경영진의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의 주요고객 또는 공급업자의 이사직이나 대주주인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관계와 선임이유를 주주들에게 밝혀야 한다.

4. 임 기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의 기간을 두고 있고 재선임이 가능하다. 이보다 장기이거나,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구성원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러므로 구성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것이 유용하다.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를 결정할 때는 두 가지 상반된 요소인 지속성(continuity)과 참신성(freshness)을 따져봐야 한다. 구성원들이 회사의 영업과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잦은 교체는 위원회의 효율성에 치명적이다. 반면에 새로운 구성원은 위원회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일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임기를 설정하기도 한다. 구성원의 임기도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5. 회 의

1) 회의소집 회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야 하며 조심스럽게 시간계획과 의사일정, 참가자를 계획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회의 빈도는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재무정보를 적시에 검토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되는 대부분의 회의를, 특히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회의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제안하는 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사회 회의에 앞서 열도록 계획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의는 재무보고와 외부감사, 내부감사주기에 맞춘다.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위원회가 평균적으로 일년에 3, 4회의 회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회의빈도와 기간은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참석자

위원회 위원이외에 다른 사람도 초대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참석자는 내부감사부서의 장이나 이사, 외부감사인 및 재무담당이사를 포함한 고위 경영자가 된다. 물론 이들 참석자들은 의사일정에 포함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의사일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세하게 기록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관련문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 의사일정이 위원회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 규정을 정기적으로 참조해야 한다.

4) 자료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에 접근해야 한다. 이는 지속적인 관리 및 비서업무의 도움을 의미한다. 때때로, 특별조사의 예와 같이 법률자문이나

기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6.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교육

위원회 위원은 충분한 배경정보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이사이지만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의 양과 질은 이사회에 필요한 것과는 다르다. 교육과정은 후보자가 위원회에 임명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새로운 구성원은 재무담당 경영자를 만나 자신이 회사와 회사의 제품 및 용역, 위험분야, 내부통제 및 재무보고제도에 대해 적절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들은 또한 감사위원회의 필요사항과 목적을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규정과 이전 회의의 회의록과 이사회에 제출한 최근의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의 <표 3>은 새로운 구성원들이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을 기술하고 있다.

V. 감사위원회의 책임

감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이사회를 대신하여 내부통제, 재무보고 및 각종 규제사항들에 대한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책임은 기업의 특수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와 위험관리제도의 적절성의 검토,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내용에 대한 검토(연차보고서에 포함되는 기업경영에 대한 설명내용과 기업의 주요한 회계처리방침과 공시에 대한 내용 및 감사결과 발견된 사항과 경영의 개선을 위하여 경영진에 권고된 사항들을 포함), 기업의 중간보고서 및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재무정보의 산출에 이용되는 과정에 대한 검토, 관련법규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 및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법률사항의 검토 및 기업 내부의 행위규정에 대한 준수여부의 감독이 포함된다.

〈표 3〉 새로운 구성원을 위한 배경정보

새로운 구성원들은 다음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 대한 배경정보가 필요하다.

(1) 회사

- 감사위원회의 규정 - 회사 정책, 재무보고 기타 특수분야에서의 감사위원회 역할
- 상위경영자와 재무담당 경영자의 자격요건과 배경정보
- 회사의 재무 및 영업활동 통제
- 중요한 회계정책과 정책을 이용하는 이유
- 회사가 준수해야 할 보고서 필요사항
- 위험분야 등 회사에 대한 특별고려사항
- 국내 및 국제 영업활동
- 소송계류 사항
-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우발사항
- 통제제도의 변경 계획
- 연차 및 반기이익의 추세
- 회사의 행위규정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경영자의 감시여부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역할
-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자문

(2) 내부감사인

- 내부감사기능의 책임
- 내부감사인의 인원수 및 자격요건
-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관계
-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로부터 받는 정보의 유형
- 당연도의 내부감사계획
- 내부감사기능의 독립적 검토 결과

(3) 외부감사인

- 외부감사의 범위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관계
-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받는 정보의 유형
- 외부감사인이 발행하는 보고서의 형태와 시기

1. 기업의 내부통제

적절하게 설계 수립된 내부통제제도는 기업활동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올바른 환경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할 수 있게 하고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잘못 기술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게 된다.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참여가 중요하며, 감한 내부통제제도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내부감사인 및 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 보고서나 이들과의 토의를 통하여 기업의 내부통제에 대해 감독할 책임을 가진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가 검토한 내부통제제도의 범위에 대하여 이해해야 하며,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험과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절차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감사위원회나 경영자는 독립적인 감사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항에 대한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와 위험관리제도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업무의 특수성에 대해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고, 보고서의 근거를 독립적인 감사인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2. 기업의 재무보고

1) 연차재무제표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재무제표가 감사위원회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과 일관성이 있고 완전하게 공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감사위원회는 당연도의 재무제표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가져야 한다. 검토의 유형은 회사의 복잡성과 산업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회계원칙과 회계추정의 선택과 적용, 공시사항의 내용, 계속기업의 공시여부, 내부통제 및 기업의 재무보고 과정상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기업의 예산과 실적간의 차이의 원인과 연도별 경영실적의 심한 등락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복잡하고 비경상적인 거래와, 주관적인 판단과 가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분야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분야의 예로는 기업의 재구축 비용, 취득 및 합병, 파생상품의 공시, 자산의 평가, 보증채무, 환경관련 채무 및 소송관련 채무를 들 수 있다.

2) 예비적인 공시, 중간보고서 및 투자분석가에 대한 보고서

기업이 공표하는 모든 재무제표는 투자가집단에서 정밀하게 분석되고, 기업의 주가는 공시된 결과에 대한 투자가의 반응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감사위원회는 예비적인 공시뿐만 아니라 중간보고서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위원회가 예비적인 공시와 중간보고서를 검토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감사위원회의 능력 배양이 가능하고, 경영자로부터 위원회로의 주기적인 정보흐름의 체계수립과 위원들의 회사의 영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이 조기에 회계정책의 처리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연차보고서가 아닌 재무정보를 감사위원회가 검토하는 경우의 이러한 혜택은 분석가가 이용하는 정보에 대한 위원회의 자료제공이나, 기관투자자에 대한 발표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독의 강화로 모든 재무보고 과정은 강화되고 투자자의 이익은 보다 더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표 4>는 연차재무제표를 검토하기 위한 질문지의 예이다.

3. 규제, 법률 및 세금 관련사항

감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및 규제사항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관련부서 직원, 회사의 법률자문 또는 세무담당자로부터 준수사항을 따르기 위한 절차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간결한 보고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회사가 수령한 규제보고서를 검토하는 일도 포함된다. 책임에 포함되는 사항에는 부정행위발생위험에 대한 고려도 있다.

4. 기업윤리규정 및 기업내부의 행위규정

기업의 평판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모든 기업이 인식하고 있다. 대중매체, 일반대중, 투자가집단이 윤리문제에 점차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윤리프로그램에 상당한 자원을 쓰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의 태도와 행동은 일반적으로 기업행동에 대한 수준을 결정한다. 내부통제제도는 일차적으로 오류와 부정을 막기 위해 고안되지만, 가장 잘 설계된 통제제도도 위반이나 오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표 4〉 연차재무제표를 검토하기 위한 질문지

(1) 재무보고 과정

- 현재 가장 재무위험이 높은 분야는 무엇이며, 재무위험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 회계시스템은 적절한가?
- 보고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감사인이나 외부감사인인 경영진에 보낸 건의서한에서 중요한 권고사항은 무엇인가?
- 경영진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기업이 계속기업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회계정책

- 중요한 회계정책은 계속해서 적절한가? 중요한 정책에 대한 가정은 여전히 타당한가?
- 당해연도에 변경된 회계정책이 있는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와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무엇인가?
- 기업회계기준이나 기타 규제사항의 변경이나 예정된 변경사항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회계정책이나 원칙에 대해 경영진과 감사인간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만족하게 해결되었는가?
- 회사의 정책이 산업 전체의 규범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가?
- 채택된 회계정책과 추정치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보수주의 회계를 따르고 있는가?

(3) 재무제표

- 각 연도별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가?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 비경상적인 회계발생액이 있는가?
 - 전기오류수정사항이 있는가? 원인은 무엇인가?
 - 재무제표상에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비경상적인 거래가 있었는가? 이와 같은 거래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거래가 특수관계자와 관련이 있는가?
 - 경영진, 회사 및 외부의 법률자문에 의해 제기된 소송, 우발채무, 상사분쟁 등에 대해 중요한 사항이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가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 계속기업의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공시하고 있는가?
 - 대출약정, 부채약정, 지분약정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가?
 - 경영진은 장기투자자산의 가치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 회사가 특이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가?
 - 유가증권이나 기타 투자상품의 가치가 연도말 이후 심각하게 변동하였는가?
 - 당기말과 전기말의 매출채권의 연령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가?
 -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금액이 큰 채권중 회수여부가 불확실 한 것이 있는가?
 - 임직원과의 거래에서 금액이 큰 것이나 비경상적인 것이 있는가? 기타 중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가?
 - 진부화 및 과다채고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채고자산의 평가감으로 중요한 금액이 있는가?
-

〈표 4〉 계 속

- 환경 등과 관련된 정부 및 규제조항으로 인해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가?
- 자산몰수나 자산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고려한 사항이 있는가?
- 세금을 납부하는 해는 언제인가? 분쟁의 여지가 있는 중요한 항목들이 있는가?
-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자산 가치의 손상이나 부채의 발생을 가져올 계약이나 우발채무가 있는가?

(4) 일반적인 질문

- 당 연도에 인식하거나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차기 이후에 인식하거나 공시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
- 회계의 재무상태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

(5) 감사행위

- 실제감사범위가 감사계획과 다른가? 이유는?
- 경영진이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범위에 제약을 가했는가?
- 경영진이 감사과정에서 협조하고, 감사인은 경영진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었는가?
- 이사진이나 경영진으로부터 문서화된 진술서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가?
- 감사결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는가?
- 감사결과 반영되지 않은 수정사항이 있는가?

이사회가 이와 같은 통제제도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거나 이 분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통제제도가 잘못 운용될 위험은 증가한다. 기업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는 많은 기업에서 이사회가 허용가능한 기업실무에 대한 지침을 정한 행위규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더 나아가 고객이나 공급자, 지역사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도 기업이 설정한 기준을 알 수 있도록 규정을 공표하기도 한다.

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이사회는 규정이 기업의 상황에 적합하고, 영업환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해야 한다. 경영진은 감사위원회가 규정을 제정하거나 영업행위지침을 설정하는데 조언을 할 수 있다. 행위규정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과정과, 직원들이 전반적인 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고,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의 예를 제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의 〈표 5〉는 회사의 윤리규정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이다.

〈표 5〉 회사내부의 행위규정의 개요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행위규정의 내용은 5가지 분류로 나누어 진다.

1. 종업원, 주주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명
2. 기업의 고객, 거래처 및 기타 관련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3. 경영진과 종업원에 대한 기업의 기대
4.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비밀유지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부자에 대한 정보
 - 기업 정보
 - 종업원 정보
 - 법률 및 규제사항의 준수

이와 같은 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업의 수탁책임
- 기업광고의 진실성
- 기업의 제품이나 용역에 대한 허용가능한 표준의 설정
-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
 -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
 - 외부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 거래처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현재 종사하는 기업 외에 별도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
- 정치헌금의 제공과 기업의 정치활동
- 부적절한 거래와 대금의 지급
- 종업원과의 관계에서의 공정성
- 종업원의 안전
- 기업의 자산과 기록에 대한 보안유지
-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기업과 종업원의 역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허용가능한 행위와 허용불가능한 행위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나열하여야 한다. 내부 규정이 효율적으로 준수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부정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경영진에게 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 경로
 - 내부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 경우 발생한 내용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선별하며, 조사결과를 종업원에게 알리는 방법
 - 이해의 상충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관계에 대한 검토 및 승인 방법
 - 각 종업원에게 내부규정 내에서의 책임을 알려주기 위한 프로그램
 - 내부규정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법
-

5. 감사위원회의 보고책임

감사위원회는 감독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활동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주들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도 고려되고 있다.

1) 이사회

이사회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보고서 형태, 구체적 내용 및 보고회수에는 기업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에 내부통제제도를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일정기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용과, 일련의 권고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감사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권고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권고안을 고려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주주

현재는 일부 국가만이 감사위원회가 주주총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Blue Ribbon 위원회는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감사위원회의 서한이 포함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서한에는 적용하고 있는 회계원칙의 질적수준과 중요한 판단사항에 대해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의 검토 및 토의 결과, 감사위원회가 기업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진술을 포함한다. 주주에 대한 이와 같은 공식적인 보고서는 현재의 실무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것이지만, 감사위원회가 시장에 공표되는 재무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증가시키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VI. 감사위원회와 내,외부감사인과의 관계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는 내부 및 외부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1. 내부감사인과의 활동

유럽내의 대규모 회사를 대상으로 PWC가 1997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88%가 내부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인의 업무수행의 범위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었다. 내부감사기능은 기업의 내부통제, 부정과 내부조사의 분야에서 감사위원회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는 경영진과 이사회에 지원을 받아야 하며 아무런 제약없이 감사위원회와 의견교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에 내부감사기능이나 부서가 없다면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경영진과 더불어 내부감사부서가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는 감사위원회 회의에 초대되어 참여할 수 있으며,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개인적으로 위원회와 접촉해야 한다.

1) 활동과 조직구조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의 활동, 기능 및 조직구조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정보의 원천은 내부감사부서의 내부규정, 조직도, 내부감사계획, 당 회계연도 중에 수행된 내부감사의 활동(수행된 과제의 내용, 수행중인 과제의 내용,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서, 내부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제안사항에 대해 경영진이 취하여야 할 절차를 기술한 내용, 내부감사부서의 자원에 대한 정보 및 내부감사인력의 조달과 훈련에 대한 계획 등을 들 수 있다.

2) 내부감사인의 자격요건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인의 자격, 적절성 및 능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감사위

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감사인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부감사인은 충분히 훈련을 받았는가(회사는 내부감사인이 지속적인 업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내부감사인이 업계의 최근 동향과 기술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가(예를 들면, 회사의 영업이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거나 전자상거래에 의존하고 있다면, 내부감사인은 내부통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부감사인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회사는 내부감사인들이 전문가집단의 일원이 되거나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등과 같은 질문을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영업환경에 비추어 내부감사부서의 규모와 구성원이 보유한 기술의 적정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속성으로는 학력이나 실무경력, 컴퓨터와 시스템에 대한 경험, 외국어 능력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또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를 임명하거나 대체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3) 내부감사의 효율성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내부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내부감사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기능이 적절한가? 내부감사기능이 회사의 활동과 정보 및 통제제도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가, 내부감사부서가 기술(skill)이나 자금 등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내부감사기능을 외부로부터 아웃소싱하는 것이 더 나은가, 내부감사계획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내부감사부서가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계획 및 이행에 참여하는가, 내부감사부서가 영업위험이나 재무위험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분야까지도 조사하고 있는가, 회사가 내부감사부서의 권고안에 따라 행동하고, 변경된 내용을 감시하는가, 그리고 내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과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한편, 아웃소싱(outsourcing)은 점점 더 인기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규모가 작고 전통적인 내부감사부서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다양한 기술(skill)에 접근할 수 있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또 다른 이점으로는 경영진으로부터 내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벤치마킹

(benchmarking)이다. 여기에는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런 활동들은 비교대상인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을 벤치마킹하는 근거가 된다.

2. 외부감사인과의 활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적정 하게 작성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감사위원회의 주된 관심사항도 신뢰할 수 있는 재무보고이므로 정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함께 감사범위와 절차를 검토하고, 재무제표감사에서 발견된 사항을 고려하며, 외부감사인의 성과를 검토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방법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의견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 외부감사인이 제안한 감사범위와 절차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제안한 감사범위와 절차를 검토함으로써 외부감사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원한다면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들이나, 기업의 최고경영진에 의하여 감사범위에 제한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알려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발견사항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져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종종 회사의 영업 및 내부통제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한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경영활동과 내부통제의

개선을 위하여 권고한 사항들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문의하고, 어떠한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검토는 재무제표가 공시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전년도에 권고사항에 대해 기업이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미국의 Blue Ribbon 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재무회계원칙의 수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질적수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와 토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토의과정에서는 기업의 재무공시의 명확성,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보수성의 정도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다.

3) 외부감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전문적 능력, 자원, 감사에 배정된 회계사의 자질, 감사인이 적용할 감사절차, 그리고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감사팀의 지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훌륭한 용역을 제공하는 외부 감사법인과 일을 계속하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회계법인이 고려된다면,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관련하여 선임을 고려해야 하며, 이사회에 적절한 권고를 해야 한다. 주주들에게 회계법인의 선임을 권고하는 것은 이사회에 맡긴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해임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해임이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신해야 하며, 단순히 외부감사인이 회계관련 문제에 대해 경영진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하여서는 안 된다. 외부감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업무의 질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의견을 듣는다. 만약 감사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책임자와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매년 외부감사인의 재선임과 아울러 감사보수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감사보수는 포괄적이고 능률적인 감사에 대한 적절한 보수인지를 검토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이 제공한 기타의 용역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4)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고려

감사위원회가 주로 감사의 유효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지만, 회계법인이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용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다양한 형

〈표 6〉 감사위원회가 감사절차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의 예

- 감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 회사의 재무보고에 필요사항은 무엇이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시간계획은 어떤 것인가?
 - 감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 어느 정도까지 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평가할 것인가?
 - 당연도의 재무제표는 최근에 변경된 회계원칙이나 규제사항으로 인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가?
 - 최근 회사가 행한 합병과 취득, 구조재설계(restructuring), 영업전략의 변경, 자금조달방법의 변경, 또는 기타 비경상적인 거래가 감사 및 보고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과 응용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내부감사인과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할 것인가?
 - 당연도중 회사의 어느 공장을 방문할 것인가? 방문하는 공장은 순환하는가? 그렇다면 방문장소와 시기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자회사중 어느 곳을 감사할 것인가? 감사하지 않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 다른 회계법인이 개입된다면, 타 법인이 업무가 수용가능하고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타 법인의 업무를 보고서에 언급할 예정인가?
 - 중요한 오류나 부정 및 불법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은 무엇인가?
-

태의 특수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용역을 통해 외부감사인이 얻은 지식은 감사의 질을 높이게 한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감사위원회는 기업과 외부감사인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지정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증가시킴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다.

다음의 〈표 6〉은 감사위원회가 감사절차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의 예이다.

VII. 경영진과의 관계

1.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의견교환

위원회 구성원들이 회사에 공헌할 수 있기 위해서는 회사의 영업활동을 제대로 이

해하고 있어야 한다. 경영진과의 정기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는 회사의 영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정기적인 요약보고(briefing)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항으로는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와 대응책, 기업이 속한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예를 들면, 규제문제나 경쟁환경에 대한 정보), 새로운 세법규정이나 다른 규제사항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계류중인 소송 사건, 제품 및 환경과 관련된 회사의 부채, 보증책임 등을 포함한 기업의 법률적 환경, 현금관리, 위험회피를 위한 헤징, 외환거래 또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이용 등 기업의 재무활동, 소재지 및 재무보고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여 기업의 해외법인 활동에 대한 내용,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와 보수정책, 관리자의 비용 및 복지후생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 및 경영진들을 위한 보험의 배상범위 등을 들 수 있다.

2. 의사결정의 효율성 증진

1997년 PricewaterhouseCoopers가 실시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유럽기업들의 태도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사위원회의 존재가 이사회에 제공되는 기업의 재무 및 관리정보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이것은 다시 기업의 의사결정을 개선시키게 된다. 일부 기업에서는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경영진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감사위원회가 관리구조에 불필요한 계층을 하나 더 추가하거나, 원치않는 관료제도를 창조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감사위원회가 확산되고 기업내에서의 위상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우려가 감사위원회의 가치를 잘못 판단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적절하게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상업적인 이점, 예를 들면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개선은 관련된 비용이나 관리자의 자원에 대한 고려를 능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VIII. 감사위원회의 질적수준의 유지

감사위원회가 기업의 재무보고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업무의 질적수준을 유지하

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이해, 경영진 및 감사인들과의 정기적인 의견교환, 감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경영진 및 감사인들과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교육훈련 및 자체 성과 평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교육훈련의 내용

감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재무관리 및 위험관리, 자금운용과 통제, 회계 및 기업보고사항 및 기업활동의 추세, 영업정책 및 기업지배구조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경영진에서 언급이 없었다면, 외부감사인이 회계 및 감사의 발전상황에 대한 내용을 제고해야 한다. 기타의 내용들은 외부의 강좌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습득할 수 있다.

2.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일부 국가에서는 이사회나 최고경영진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업무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일부의 실무지침서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원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위원회 전체의 성과를 평가하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어떠한 성과평가과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분야에 대한 행동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무익하게 될 것이다.

1)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개별적인 성과평가

감사위원회의 책임자나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원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영업에 대한 지식,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객관성과 독립성,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해, 감사위원회회의를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의욕 및 회의참석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감사위원회전체에 대한 성과평가

감사위원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는 정기적으로(예를 들면, 일년) 수행한 활동내용과, 책임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자신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체규정에 비추어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교육훈련과 자원, 회의, 활동, 감사인 및 경영진과의 관계 등이 있다.¹⁾

3. 감사위원회의 업무와 자체평가를 위한 실무지침서의 작성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지침서’를 마련하여 감사위원회가 실무지침서의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질적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X. 결어 - 감사위원회제도의 미래

감사위원회는 경영자로부터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해야만 효과적인 감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내부감사인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전체가 경영자들로부터 독립적인 외부인사들로 구성될 것을 요구한 뉴욕증권거래소는 기업과 관련 있는 자, 또는 임직원들이 감사위원회에 속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기업 또는 자회사의 전직 임직원이 기업으로부터 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사회에 판단에 그들이 독립적일 수 있고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이 위원회에 속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소위 회색영역의 인사들인 경영자의 친척, 기업의 자문위원, 은퇴한 임원 등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들도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색영역의 외부인사들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감시기능의 효

1)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지침서로서 1993년에 미국의 PricewaterhouseCoopers는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Research Foundation(IIA)’을 위하여 “Improving Audit Committee Performance: What Works Best”라는 타이틀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과성은 저하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로부터 독립적인 외부인사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계, 경영, 경제, 법률, 세무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사가 발탁되어야 하며, 감사위원회 대표는 각 위원의 독립성, 객관성, 기업에 대한 지식, 역할과 책임, 위원회 모임의 참여 여부 및 임하는 자세 등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위원들의 서로 다른 견해와 풍부한 경험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이어야 하고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작은 규모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허위재무보고에 관한 국가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기업의 행위규범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마련한 계획을 매년 검토함으로써
-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일상적으로 감독한다.
- 모든 공개기업은 감사위원회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회사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는 그
- 규정을 인준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하다면 개정한다.
- 감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원과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분기보고서 작성과정을 감독해야 한다.
-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인이 회계보고서 작성과정에 적절히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외부감사인과 적절하게 협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경영자가 적절히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감사위원회와 경영진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감사위원회는 경영자가 의뢰하려는 외부감사인의 경영자문 업무의 형태와 보수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 모든 공개회사는 SEC의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감사위원회 의장이 서명한 회계기간 중 감사위원회 책임과 활동에 관한 서한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경영자는 회계보고에 관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사위원회로부터 객관적인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또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서 독립성과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추천하고 감사보수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서 사전에 감사범위 및 감사절차를 포함한 모든 감사계획과 감사보수를 철저히 검토하여 그 적절성 여부에 관하여 결정해야 한다. 특히, 외부감사인과 만나 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평가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에 해가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외부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외부감사인을 추천하고 적절한 감사보수수준을 결정함으로써 과당 경쟁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수입료 덤핑과 감사의견구매를 막고 좋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인의 임명과 해임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내부감사 부서의 인사와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내부감사 부서를 장악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와 감사계획, 일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도 통보하여 감사절차와 감사범위 등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과 마찬가지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인 비상근이사인 사외이사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내부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감사인의 내부감사업무를 통제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여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의 성격과 재무제표에 관하여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감사위원회와 상의하여 경영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경영자가 직접 개입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경영진을 제외하고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의견교환을 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된 후에 외부감사인과 경영진과 특정 회계문제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가 의견교환을 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조정은 필요하다면 경영진과 함께 하는 회합에서 갖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회

합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는 회계감사중에 발견한 예외적인 회계처리와 감사상의 문제점, 재무제표 공시의 적정성, 주요 회계원칙의 변경 및 감사범위의 중대한 변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논의한 감사위원회 기능을 종합하면, 감사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를 검토하고, 재무제표의 작성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밖에도 기업 윤리규범의 제정과 검토, 특별한 관리가 요망되는 지출의 검토, 정부규정의 준수여부 및 회사와 경영진과의 거래 승인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Blue Ribbon Committee - <http://www.nyse.com/search/search.html>

Blue Ribbon Committee (1999).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Blue Ribbon Committee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Audit Committees*. New York, NY: New York Stock Exchange

PricewaterhouseCoopers (1997). A survey of audit committee practice in major European companies.

PricewaterhouseCoopers (2000). *Audit Committee Effectiveness: What Works Best*.

PricewaterhouseCoopers (2000).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Board: What Works Best*.

A Study on the Audit Committee

Chang-Woo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various discussions on the Audit Committee which is currently on its way to be mandated in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This paper also makes some suggestions regarding the details of implementing the Audit Committee in the areas of its structure, participan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ts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and the quality control. A brief survey of current Audit Committees in various countries is also introduc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specific social environment which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Keywords: Audit Committee, Structure, Participan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Quality Control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